

1747년(英祖23) 問慰行을 맞이한 對馬藩의 동향

다사카 마사노리
(선문대학교)

◆ 국문초록

본고는 1747년(영조 23·연향 4)에 대마번에 파견된 제 38차 문위행에 관하여 대마번이 수행해야 할 임무가 무엇이었으며, 임무 수행까지의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 문위행은 德川吉宗의 퇴후 및 번주의 귀환을 축하하는 목적으로 파견되었으나 동시에 다가올 통신사 내빙 협의도 수행한 사절이었다.

1745년 후반에 吉宗 퇴후한 후에 家重가 관백직을 승습하였다. 이에 따라 1746년에 에도막부는 대마번에 통신사 내빙 추진 명령을 내린다. 에도 도착이 2년 뒤 4~5월에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통신사 내빙까지는 많은 절차가 필요하였다. 또한 조선은 일본과의 교류에 있어서 선례를 따를 것을 원칙으로 고집하였다. 그런데 이번 관백 승습이 구 관백의 퇴후로 이루어졌는데 근래 100년은 구 관백의 흥거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구 관백에 대한 서계나 예단을 보낸 선례가 될 만한 기록물이 없어, 조선은 일본의 요구에 수월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 막부의 위신을 세우며 막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 대마번이 전개하는 조선과의 협상과정을 고찰한다.

주제어 : 1747년, 문위행, 대마번, 대마도종가문서, 조선통신사

1. 들어가며

1746년(英祖22·延享3)말부터 1747년에 들어서 제 10차 조선통신사 내 병 교섭이 본격화된다. 그 중 하나가 조선이 대마번에 파견하는 문위행(일본 명칭 譯官使)이다. 문위행이란 조선왕조로부터 주로 대마부중(對馬府中)에 파견된 외교사절이며, ‘주로’ 라고 하는 이유는, 에도(江戶)에도 1회 파견되었기 때문이다. 1630년(仁祖8·寬永7)에 시작되어 1866년(高宗3·慶應2)까지 58회에 걸쳐 이루어진 문위행은, 한 회 파견인수가 倭學譯官 2~3명을 필두로, 약 60~120명으로 구성되었고, 그 목적은 초기에는 번주(藩主) 귀환을 축하 위로하는 것이 주였으나, 이 외에도 대마번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부(幕府) 및 대마번의 경조(慶弔)를 위해서였다고도 한다.¹⁾ 본고에서 논하는 1747년 문위행은 구 관백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퇴휴와 번주(藩主)의 귀국을 축하하기 위해, 역관 당상 중거(仲舉) 현태익(玄泰翼)과 당하 대년(大年) 홍성구(洪聖龜)를 필두로 총인원 87명(그 중 22명은 대마번의 접대가 불필요한 인원)이 3월 22일에 부산을 출발하여 약 3개월 간 대마부중(對馬府中)에 체류한 38번째 문위행이다.²⁾

본고는 1748년에 에도(江戶)를 찾아간 제 10차 통신사 연구의 일환으로,

-
- 1) 문위행 전체적으로 개관하기에는 池內敏, 「譯官使考」,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62, 2016, 125-147쪽이 참고가 된다. 한국에서의 선행연구는, 홍성덕,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16(2), 1990, 118-161쪽. 「조선후기 對日 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11, 1999, 61-81쪽. 김정미, 「17~18세기 對日 외교·교역과 매[鷹]」, 『역사와 세계』 34, 2008, 95-136쪽. 이상규, 「仁祖代 전반 問慰行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123-164쪽. 「17세기 중반 問慰行을 통해 본 대일외교의 내용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303-338쪽.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3-34쪽. 유채연,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183-219쪽. 정우봉, 「1734년 문위사행록(問慰使行錄) 『해행기(海行記)』 연구」, 『대동문화연구』 94, 2016, 233-258쪽. 등 다수 있다.
- 2) 『信使譯官度數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6501.
 「延享四丁卯年, 乾隆十二年, 譯官 仲舉玄燾知, 大年洪雲正 譯官之來賀, 有德大君遜位兼賀義如公回州也. 一行六十五人, 外有二十二人帶來自供. 此行無賀遜位書, 譯使口演耳. 三月十九日釜山上船, 廿二日渡海佐須奈, 廿六日到府, 五月十六日因信行事設別宴于府庁, 六月十六日上船, 七月四日渡海, 裁判鈴木市之進迎送」

1747년 문위행에 관한 고찰이다. 통신사 내빙을 앞둔 문위행을 논한 선행연구로서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³⁾」가 있어, 문위행의 전체적 행사 진행에 관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문위행도 그 당시의 정세에 따라 교섭 내용과 양상은 다르다. 본고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제 10차 조선통신사 내빙에 이르는 한 과정인 통신사 전 문위행을 둘러싼 대마번의 동향을 고찰한다. 연구 대상이 된 사료는 주로 아래에 제시한 대마도종가문서(對馬宗家文書)이다.

- ① 『延享信使記錄第二冊』, 대마종가문서[제 1 기-제30월], 유마니 서방(書房)
- ② ①의 淸書本,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520
- ③ 『往復書狀全<共二三冊之內>』,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534
- ④ 『譯官記錄始<共二三冊之內>』,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535
- ⑤ 『譯官ニ付諸御用向控末<共二三冊之內>』,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5330
- ⑥ 『譯官記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211
- ⑦ 『譯官迎送裁判毎日記』, 대마역사민속자료관, 분류기호 Dz-6, 번호 1

②의 원표지에는 「大御所様御隱居之爲御祝詞譯官被成御召, 殿様御歸國之御祝詞相兼罷渡, 信使之儀致講定候覺書」, 첫 장에는 「信使前譯官記」란 기재가 있으며, 이를 통해 문위행의 전모를 알 수 있다. ①②는 각각 대마번 에도번저(江戶藩邸)와 대마부중 번청(藩廳)에서 보관한 같은 문서이나, ①에는 선을 그어서 삭제한 부분이 보이며, ②에는 ①에서 삭제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②는 ①을 청서한 것이다. ③~⑤는 ①의 자료가 된 사료이다. ④에는 ①이 기재하지 않은 상세한 기록이 많다. 예를 들어, 다례(茶禮)나 만송원(萬松院) 참예(參詣), 중연석(中宴席) 등 때의 방이나 공간 배치도가 세밀하게 그려져 있다. ⑥은 표지가 없다. 역관봉행(譯官奉行⁴⁾)과 조

3)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 『비교문화연구』 11-2, 2007, 163~189쪽. 이 외에도 同氏에는 「延宝九(1681)年正月譯官使」, 『일본학논집』 20, 2005, 206~222쪽. 「天和元年講定譯官使派遣まで」, 『일본학논집』 21, 2007, 18~45쪽 등이 있다.

4) 역관 신변 관리 실무자.

선방지배(朝鮮方支配)⁵⁾ 및 그 외 부서와 주고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⑦도 ⑥과 같이 표지가 없다. 첫 장에는 「三月十九日 譯官上船」부터 시작하여 「七月四日 御關所에서 渡海」까지의 문위행 일행의 일정이 기재되고, 다음 장부터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④와 거의 동일하며 실제로는 「裁判記錄」이 아니라 「譯官記錄」이다. 이들 사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다례를 논하면서 고찰하겠다.

II. 渡海譯官護行次裁判⁶⁾의 임무와 문위행 대마부중 도착까지

『延享信使記錄』第二冊 「信使前譯官記」(①②)에 따르면, 1745년 10월 17일에 구미가시라(與頭)⁷⁾ 鈴木市之進이 도해역관호행(호래)차재판에 임명되어, 1746년 8월 7일에⁸⁾ 조선통신사 내빙을 명하는 막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소식이 9월 13일에⁹⁾ 대마도에 도착한 것을 기다리고, 16일에 大浦兵左衛門으로부터 출발하라는 명을 받는다. 이 명령이 바로 대마번이 이번 문위행 초빙을 통하여 성사해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일기형식 기록 뒤에 이어진 「右譯官ニ付諸御用向之内信使ニ相構¹⁰⁾候分, 是より相記候事」라는 항목 첫 번째 「裁判鈴木市之進江相渡候書付左記之」 중에 기록되어 있다. 아래에 인용한다.

裁判鈴木市之進江相渡候書付左記之

貴殿儀, 大御所様御隠居御祝詞之譯官迎之裁判兼而被仰付置候處, 頃日江戸御左右到來, 信使御用二付, 殿様御暇御拜領被成, 當月中旬御發駕被遊之旨申來, 信使之義來々辰年春中江戸江着候様ニ与公儀思召之旨事急ニ相聞候.

-
- 5) 조선 관련 업무 책임자.
 6) 『通信使謄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규12870의 1)에서는 ‘渡海譯官護行次裁判差倭, 渡海譯官護來次裁判差倭’라고 표기. 일본 명칭은 ‘역관영송재판(譯官迎送裁判)’.
 7) 지배를 보좌하여 지배를 통해 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관직.
 8) 『延享信使記錄』第一冊, 대마중가문서[제 I 기-제30필], 유마니 서방.
 9) 『延享信使記錄』第三冊, 대마중가문서[제 I 기-제30필], 유마니 서방.
 10) ①에는 ‘構’, ②에는 ‘拘’.

左候得者譯官兩使當年內冬遲候而正月初渡海無之候而ハ信使渡海之期, 公儀思召之通二難相成. 至而大切成事候間, 貴殿義, 今度飛船を以被差渡候. 館着候ハ、早速兩譯召寄右之次第申達, 茶禮早々相整, 譯官下釜渡方之義隨分令催促, 右之期二不相後候様ニ心力を盡可被相働候.

一譯官爰元二而茶禮之節, 御代替ニ付信使差渡御祝詞被申上度候間, 時節之儀御差圖被成被下候様ニ相伺候得与朝廷方被申上候由口上二而御前江申上候格ニ候間, 兩譯江申達, 譯使於都表堅相極罷越候様ニ可被申届置候. 一信使來聘時節之儀, 譯使相伺候ハ、直修聘使被差渡, 辰ノ春中江戶參着候様ニ被仰達候得与兼而公儀より可被仰出趣ニ相聞候間, 此段兩譯江申達, 譯使爰元滞留之内, 修聘使被差渡候段, 能々相心得居候様ニ慥ニ可被申届置候.

一渡海譯召連候人數之儀, 享保六辛丑年之譯官より一行六拾五人ニ相極候處, 其後每度內証二而多少之間, 加入連渡候段不宜仕形二候間, 今度者數外之人數無之一行六十五人罷渡候様堅可被申達候.

一此節譯官持渡之書契, 公儀御隱居之御祝詞并殿様御歸國之御祝詞, 兩様別紙ニ而持來候儀, 間違無之様ニ慥ニ可被申達候.

一譯使持越候御書翰之寫, 早々飛船を以此方へ差越否之返答申達候上, 譯官渡海いたし候様ニ可被仕候. 以上.

九月日 年寄中

鈴木市之進殿¹¹⁾

위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연내 또는 내년 1월초까지 문위행 도해가 성사되도록 조선에 재촉할 것. 이는 그렇지 않으면 막부가 명한 내후년 4, 5월에 에도 도착하도록 하라는 기일을 지킬 수 없어서이다. 신속히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 재판 鈴木市之進는 비선(飛船)을 타고 바다를 건너, 다음 해 1월초까지 문위행이 도해하도록 재촉하라는 것이다. 둘째, 대마도에서의 차례 때, 조선의 조정이 일본의 관백 승습 축사를 통신사로 하여금 전하기를 원하여 그 시기를 역관이 문의하도록 사전 협의하라는 것. 일본은 어디까지나 조선의 요청으로 신 관백에게 사신을 보내는 것이라는 면모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다. 셋째, 역관이 통신사 파견 시기를 문의하면 즉시 통신사청래

11) ①에서 인용. 이하 원문 인용에 있어 합자 ‘ち’는 ‘より’, 조사 ‘と’의 ‘与’는 약자로 표기하여 구두점을 보완했다.

차왜(일본 명칭은 修聘參判使)를 파견할 것이니 이를 사전에 확실히 인지시킬 것, 넷째, 문위행 인원수는 65명으로, 다섯째, 문위역관이 지참할 서계로서 구 관백 퇴휴와 번주의 귀국에 대한 축사를 각각 2통으로 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계의 필사본을 대마도로 보내어 번으로부터 서계 내용 서식 등에 문제가 없다는 회답을 받고나서 도해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분석하면, 이번 통신사 내빙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48년 4~5월에 에도 도착이 성사되기 위해 신속히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사절단을 접대하는 비용이 문제가 되므로, 조선도 대마도와 마찬가지로, 한 명이라도 많이 파견하려고 하고, 받는 데에 있어서는 규정 외 인원은 접대하지 않으려고 했다. 과거를 보면, 1721년의 문위행은 65명이었고, 1726년은 2명이 늘어 67명이었으며, 이중 2명은 의원(醫員)이었다. 당시 의원은 약재지식을 위해 특별 배정된 것으로, 이로 인해 초과 인원이 발생되어도 문제되지 않았다. 이어서 1734년과 1738년, 그리고 이번 에도 대마번이 접대한 문위행은 65명, 초과한 인원은 ‘自供’ 즉 번이 접대하지 않은 인원으로 처리하였다. 게다가 이번에는 번주의 귀국 뿐만 아니라 구 관백의 퇴휴에 대해서도 축사 서계를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 교섭에서 중요시한 ‘선례에 따르라’고 하는 규율에서 벗어난 상황인 것이다.¹²⁾ 1624년 이후, 관백의 승습이 구 관백의 퇴휴로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이번 문위행에 구 관백 퇴휴를 축하하는 서계를 지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조선으로서는 관백퇴휴고지차왜 접대할 때부터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차왜 접대에 나서지 않으려고 한 것은 졸론¹³⁾에서 논하였다. 대마번은 문위행이 지참한 서계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문위행을 맞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일을 진행하였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역관영송 재판의 최대 과제는 연내 혹은 새해 초에 문위행 도해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문제는 ‘선례가 없는’ 사항의 교섭으로 인한 도해의 지연이다. ‘선례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교섭이 길어짐으로써 문위행 도해가 늦어진다면 본

12) 문위행 파견이 시작된 것은 1630년이며 마지막으로 구 관백의 퇴휴로 관백의 승습이 이루어진 것이 1624년이어서 문위행이 구 관백 퇴휴의 축하 서계를 전달한 선례는 없는 것이다.

13) 田阪正則, 「關白退休告知差倭(1746년)을 둘러싼 朝日間交渉」,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 221~248쪽.

말전도이기 때문이다. 체면과 실리를 어떻게 맞추어 나갈지 답답한 교섭이 기다리고 있음은 분명하다.

도해역관 차출에 관해서는, ①②에 의하면, 11월 18일에 館守 內野權兵衛 및 鈴木市之進 두 사람 이름으로 된 서장(書狀)으로 지난 14일에 조선 한양에서 관문(關文)이 도착하여 당상관 仲舉 玄泰翼, 당하관 大年 洪聖龜가 차출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번에 전달된 것을 알 수 있다.¹⁴⁾ 이후 두 역관의 동향은 ③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2월 16일에 관수와 재판(內野權兵衛 · 鈴木市之進)으로부터 조선방지배(大浦兵左衛門 · 淺井與左衛門)로 발송된 서장에는, 부산의 두 역관(愼榮來와 張璘維)이 통사(通詞)를 통하여, 그리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은밀히 두 도해역관이 24~25일에 동래에 도착할 것임을 전함과 동시에 관수와 재판 측에서 재촉한 성과라는 보고가 기록되어 있다.¹⁵⁾ 기록에 따르면, 4일 후에 같은 관수와 재판이 조선방에 보낸 서장에는 전날 도해역관의 선문(先問)이 동래에 도착하였고 두 도해역관이 17일에 한양을 출발했다는 소식이 왔다는 것이 혼도와 별차를 통해 전달되었다.¹⁶⁾ 그렇지만 한 달 후인 1월 20일자 관수가 조선방지배에 보낸 서장에는 동래부사로부터 현태익이 도중에 병이 생겨서 도착이 늦어지고 있으나 오늘 내일에 도착할 것과 도해역관이 부산에 도착해도 도주고환차왜(일

14) ①② 「渡海譯官姓名書付, 兩譯より差出ニ付, 帳末ニ書載仕, 入御披見候段, 十一月十八日之日付を以館守內野權兵衛, 裁判鈴木市之進方より申越ス.

〃帳末

覺

一間慰官 堂上 仲舉 玄僉知

堂下 大年 洪僉正

丙寅十一月日 訓導 愼僉知印

別差 張判事印

15) ③ 「兩譯より通詞中迄申聞, 且又内々ニ而爲承候得者, 玄僉知, 洪僉正ニも當月廿四五日頃, 東萊迄到着可仕由, 東釜より召連候者共方迄申來候由風聞仕候. 我々ニも隨分催促仕罷在候.

十二月十六日 鈴木市之進 · 內野權兵衛

大浦兵左衛門様 · 淺井與左衛門様

16) ③ 「今日兩譯入館仕申聞候ハ都表より渡海譯先問, 昨日東萊迄相達, 玄僉知, 洪僉正當十七日日柄克候付, 都表發足仕候旨申來.

十二月廿日 鈴木市之進 · 內野權兵衛

大浦兵左衛門様 · 淺井與左衛門様

본 명칭은 告還使의 파견이 없으면 배에 올라탈 수 없다는 소식이 전달되었다.¹⁷⁾ 이전부터 문위행은 번주(도주)의 귀국을 축하 위로하는 명분으로 파견된 사절이었기 때문에 번주의 귀국을 알리는 고지차왜가 와야 문위행이 파견되는 절차가 있다. 처음에는 12월 25일이었던 도해역관의 부산 도착이 한 달이나 지연된 상황에서 관수와 재판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같은 날에 관수와 재판으로부터 온 서장에서 세 개 항목으로 된 보고가 조선 방에 전달되었다. 그 첫 번째는, 관수와 재판 앞으로 혼도와 별차를 불러들여 엄하게 책망하고 또 통사(通詞)들을 매일 혼도와 별차가 근무하는 사카노시타(坂ノ下)에 보내며 재촉한 결과, 현대익은 광주(廣州)에서 병이 나고 며칠 체류하고 있었으나 어제 부산에 도착했다는 것,¹⁸⁾ 두 번째는 문위행이 한양에서 지참한 서계에 관하여 고지차왜 파견 전이라서 서계를 지참하지 않고 있어 사본(寫本)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문위행 파견에는 그들이 지참할 서계의 내용을 번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

17) ③ 「一筆啓上仕候。昨十九日私茶禮相整候付、東釜相揃被罷出候故、先格之通御書簡無別條相渡。當時之挨拶相濟、訓導を以渡海譯下り方及延引兼而兩譯を以被仰聞候とハ諸事間違気毒千萬存候。渡海譯罷下候ハ、弥差急致上船御様ニ御差圖被成可被下旨申達候處、府使返答ニ被申聞候ハ渡海譯義敏致發足候旨、先達而相聞居候處、玄僉知義道中ニ而相煩、致遅々候得共、其後段々快、今明日中到着仕筈ニ御座候。乍然告還使渡海無之候而者、上船難申付御座候間、早々御渡海有之候様ニ御心遣可被成旨被申聞候付、此方告還使之義ハ從夫被仰聞候迄茂無之風順次第可致渡海と存候。兩國之間使者往來之儀者御存之通、重き事ニ而少しニ而も間違候而者弊端不輕事ニ御座候處、此度渡海譯之義何角と間違兼而申合置候時節、大ニ後れ迂濶ニ相成、何とも気毒千萬存事ニ候。此上ハ御心遣を以告還使渡海次第直ニ致上船候様ニ嚴敷被仰渡度旨、再三申達候處、委細伺其意候趣、被申聞、禮式等先例之通相濟罷歸申候。此段爲可申上、如斯御座候。恐惶謹言。

正月廿日 内野權兵衛

大浦兵左衛門様・淺井與左衛門様」

18) ③ 「一筆啓上仕候。渡海譯下り方之儀、東萊より兼而兩譯を以被申聞候与ハ相違段々及延引候付毎度兩譯我々共方江召寄、致嚴責、通詞中をも毎日坂ノ下江差越催促仕候處、渡海譯玄僉知義、廣州と申所ニ而病氣差發數日及逗留漸昨十九日下釜仕申候。兩人共ニ少々相痛候旨申聞候故、近日入館仕次第諸事先格之通申渡候様ニ可仕候。先達而申上候とハ間違、下り方及延引候付、早速飛船を以申上筈ニ御座候得共、船も少く譯官下釜今日々々と兩譯共申聞候付、段々相待罷在、飛船及延引候間、左様被思召上可被下候」

으면 문위행을 보내라는 조항이 있었다. 이에 그 서계의 사본을 번에 전달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관수와 재판의 지시를 받은 통사 阿比留俊三郎, 渡島源右衛門 두 사람이 교대로 혼도를 찾아가서 설득했고, 그 결과 다음날 아침에 사본 제출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서계는 번주 귀국에 관한 것 뿐, 구 관백 퇴휴 축사 서계는 조정의 허락이 없어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조선방지배의 회답은, ‘서면에 문제는 없으며 구 관백 퇴휴 축사는 도해역관이 구두로 전달하게끔 엄히 지시하라’는 것이었고, 이는 본문 상란에 기록되어 있다.¹⁹⁾ 세 번째는 고지차왜가 하루 속히 파견되도록 희망하는 내용의 보고이다. 드디어 문위행 도해가 가시거리에 들어온 것이다.

도해역관 두 사람 모두 19일에 부산 도착 후 건강이 좋지 않았다. 이에 이후의 교섭은 구 관백 퇴휴 축사 서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된다. 21일자 서장에 의하면, 동래부사가 조정에 다시 계문(啓聞)을 보내어, 만약 구 관백에 보낼 서계를 요청할 일이 있다면, 당상역관을 한 명 더 증원(增員)할 방법도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문위행 도해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관수와 재판 그리고 조선방 모두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²⁰⁾ 이를 근거로 하루라도 빠른 도해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19) 위에 이어서 「一告還使渡海無之候付, 譯官共書翰不持下旨申聞, 寫差出シ不申候付, 兩譯方へ通詞阿比留俊三郎, 渡島源右衛門代ル々々罷越, 訓導江申候ハ, 譯使被罷下御書翰不被持下道理有之間敷事二候. 寫不被差出候而ハ各首尾宜有之間敷候間, 都表より御差圖ニ而告還使渡海無之内, 本書被持下候儀, 表向難被仰達事二候ハ、本書之寫を被持下候趣ニ館守裁判江取成可進候間, 何となしニ念入被寫, 我々方迄遣候様ニと申諭候處, 翌朝訓導方より俊三郎, 源右衛門相招キ問慰之書之寫計差出候付, 御傳位之御書翰之義, 如何ニ候哉と相尋候處, 先達而申候通, 都表何分ニも承引無之, 弥口上ニ而申上筈之由申聞候旨, 通詞中罷歸申聞候.

<頭書: 譯使持渡之御書翰寫, 告還使未渡海無之候故, 及難澁候へとも色々被申諭, 寫差出し候付, 被差越令披見逢吟味候處, 書面宜相見一段之事候. 渡海譯へも節々可被致挨拶候. 將又御伝位之書, 弥持下不申由, 左候ハ、兼而申達置候通, 口上ニ而御祝詞申上候義, 堅ク可被申達置候.>(中略)

十二月廿日 鈴木市之進・内野權兵衛

大浦兵左衛門様・淺井與左衛門様」

20) ③ 「追而啓上仕候. 渡海譯仲舉玄僉知, 大年洪僉正, 一昨十九日下釜仕候得共, 少々相痛候付, 一兩日内罷出可申由, 渡海譯并兩譯より小通事を以相屆候故, 早速兩譯致入館候様ニ申遣, 通詞中同道ニ而館守方ハ罷出候付, 我々致對面御伝位之御書翰, 弥持下候哉と相尋候處, 訓導申聞候ハ玄僉知, 洪僉正ニ茂於都表色々相働候得共, 一円被相拒致慶之御書翰ハ寫逆持下不申由申聞候付,

있다. 도주고환고지차왜가 2월 4일 왜관에 도착하자 드디어 문위행 승선(乘船) 날을 정하는 단계에 이른다. 2월 27일이 길일이라며 도해역관으로부터 이 날을 승선 날짜로 희망한다는 전달이 13일자 서장 두 번째 항목에 기록 되어 있고, 이때가 되어도 현대익은 완쾌하지 못하고 있고 홍성구도 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왜관 입관도 하지 못한 상태였다.²¹⁾ 24일자 서장에도 현대익은 담병(痰病) 재발 때문에 완쾌까지는 아직 시일이 필요하다고 기록 되어 있다.²²⁾

十一月廿八日與書を以御差圖被仰下候通，都表之處置不埒之次第，先例之趣委細申達，兩譯ニ至リ不働之段，嚴敷申達候處，訓導返答ニ申聞候ハ只今被仰聞候趣東萊江罷登委細申達候様ニ可仕候。萬々一又々啓聞有之候ハ、堂上一人被差添致慶之書相整リ申事も可有御座候得共，成否之所我々ニ至甚無覺束奉存候。何分ニも御急之儀ニ御座候間，問慰使計ニ而御濟被成，弥口上ニ而申上候様ニ被成度旨申罷歸候。

<頭書：承届候。先達而申越置候通，問慰之御書翰持越，致慶之義ハ口上ニ而無間違申上候様ニ其元ニおゐて堅可被申置候。>(中略)

正月廿一日 鈴木市之進・内野權兵衛

大浦兵左衛門様・淺井與左衛門様

- 21) ③ 「一渡海譯江上船日取之儀申渡返答延引仕候付，兩譯を以催促仕候處，昨十二日別差致入館，且渡海譯方より茂通詞中迄以書中申聞候ハ日取之儀折々預御催促候付，我々ニ茂油断不仕候得共相渡有之。漸來ル廿七日吉辰ニ付，上船相極候段相届候付，別差江返答申達候ハ兼而各存知之通，年内ニも上船無之候而ハ不叶事ニ候を何角と相渡致延引氣毒ニ存候。當月廿日前後ニも上船有之度候。其上重立候事故玄僉知洪僉正ニ茂致入館可被申聞事ニ候を返答延引而已ならず畧儀之段不埒，其意旨申達候處，我々ニ茂左様存事ニ御座候得共外向差支も有之。日柄茂擇申事ニ御座候得者不得已，右之趣相極申候。近日乘リ船御檢分共請候而無間違上船仕候様ニ兩人ニも可申達候。兩人内罷出申上候皆ニ御座候得共玄僉知儀者途中より之病，駭と無御座。洪僉正儀者眼病氣ニ而乍略義我々方迄申越候段申聞候付，渡海譯義近日致入館候様ニ申渡差返候」

- 22) ③ 「一筆啓上仕候。昨日裁判方へ兩譯罷出渡海譯上船之儀，來ル廿七日と相極申上置候處。玄僉知儀都表發足時分より之痰病再發仕起臥も自由ニ難成候付，近日中難得快氣病休ニ御座候故，廿七日之上船相延候旨申聞，且又渡海譯方よりも通詞中迄諺文狀を以右之段申來候故，病氣之様子兩譯江相尋候處，甚氣遣敷模樣ニ者不申聞候。隨分催促仕追而日取相極次第可申上候。先此段御案内爲可申上，如此御座候。恐惶謹言。

<頭書：承届候。上船段々及延引氣毒成事ニ候。定日相極候得者於爰許諸用意有之。ケ様及違変候而ハ御費も不少事ニ候間，又々日限相極候節ハ隨分堅く申極，其上ニ而可被申越候。>

五番 二月廿四日 鈴木市之進・内野權兵衛

3월이 되어 드디어 현태익은 완쾌한다. 왜관 입관에 이르는 것은 10일이며, 이 때 승선 날을 19일로 정하고 그 날짜에 예정대로 승선이 이루어진다. ③ 「譯官ニ付江戸御國往復書狀左記」 중에, 4월 12일자 번이 에도번저(江戸藩邸)에 보낸 서장에는 「今般渡海之譯官兩使, 仲舉玄僉知, 大年洪僉正, 上下六拾五人外加廿二人, 迎裁判鈴木市之進乘船司前ニ先月廿二日佐須奈御關所到着, 御改無別條. 同廿六日無異儀府着之段ハ先達而申遣候. 可相達ト存候」라고 기록되어 있다.

Ⅲ. 다례(茶禮)와 譯官의 口上(구두진술)

문위행이 대마부중에 도착하고 일주일 후인 4월 3일에 종가저택(宗氏屋敷)에서 다례가 이루어졌다. ①②④에 따르면 문위행 일행 중 참석한 인원은 역관 당상·당하 두 사람, 상관 25명, 중관 34명, 그리고 하관 15명이다.²³⁾ 오전 10시 전후에, 종가저택(宗氏屋敷)으로 출발할 시간을 알리는 사신(時分之使者) 小野求馬가 말에 올라타 9명²⁴⁾을 데리고 역관 숙박소인 객관(客館)을 찾아갔다. 출발시간을 알리는 사신은 이정암(以酏庵)으로도 보내져, 그 역할은 佐治奎左衛門가 맡았다. 이정암 승려는 역관보다 일찍이 종가저택에 도착하여 서원(書院)에서 기다리게 된다. 이 때 年寄²⁵⁾들이 팔간복도(八間廊下)까지, 그 외 관리들은 식대(式臺)까지 나와서 이정암 승려를 맞이한다. 이러한 다례 당일의 절차는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²⁶⁾가 상세히 밝힌 1681년 문위행 때와 비교하면 사람만이 바뀌었을 뿐, 1681년의 절차를 선규(先規)로 하여 충실히 재현되고 있다.

이날의 각 기록을 비교해 보자. 『延享信使記錄』 「信使前譯官記」(①②)는 막부에 올릴 보고용이다. 막부는 후일에 고증(考證)하는데 도움이 되면 된

大浦兵左衛門様・淺井與左衛門様

23) ⑥에 따르면 이날 번저를 방문한 사람은 두 역관, 상관 25명, 중관 25명, 하관 15명.

24) ⑦은 上下 9명, ⑥은 上下 11명으로 기록.

25) 번주를 보좌하여 번 경영의 최고 간부이며 지배를 맡는 경우가 많음.

26)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 『비교문화연구』 11-2, 2007, 163~189쪽.

다. 이에 대하여 다른 사료는 후일에 각 부서 업무에서 고증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레 날의 기록을 통하여 ④⑥⑦의 성격을 분석해보면, ④는 ③⑤와 함께 「共二三冊之内」중 하나이고, ③⑤ 표지에는 「御用掛 淺井與左衛門」 즉 문위행 접대 및 행사를 총괄한 조선방지배인 동시에 역관지배(譯官支配)의 임무를 맡은 淺井與左衛門가 이 기록의 작성책임자인 것이 명기되어 있다. 기재된 내용도 문위행 전반에 걸친 상세한 기록이 되어 있다. ⑥은 표지가 없다. 따라서 표지로 부서나 작성책임자를 판명할 수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장에 「今般我々江被仰渡候御書附三通, 與左衛門殿御渡被成候ニ付, 左ニ記之ス」라고 기재되어 있다. 左記란 발신자 淺井與左衛門, 수신자 多田平左衛門·吉川兵部左衛門 그리고 각 부서로 되어 있으며, 여덟 번째 장에서 날자 순으로 된 ‘每日記’로 되어 있는데 날자 아래에는 多田平左衛門·吉川兵部左衛門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즉 그날에 근무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근거로 ⑥은 多田平左衛門·吉川兵部左衛門 즉 역관봉행(譯官奉行)에 의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⑥의 다레에 관한 기록은 역관 객관을 찾아와서 종가저택(宗家屋敷)으로 출발할 시간을 알리는 사신에 관한 기사만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외의 기록은 적다. 다른 날의 기록을 분석하면 역관봉행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⑦도 ⑥과 똑같이 표지가 없고 심지어 날자 다음으로 기재될 출근자 명단도 없다. 『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에 「D倭館 5.雜-譯官迎送」로 분류되어 있으며, 표제명이 『譯官迎送裁判每日記』라고 기재되어 있다.²⁷⁾ 내용을 보면, 첫 기사는 이정암에 보내진 사신 佐治奎左衛門에 관한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정암 승려가 종가저택에 도착했을 때 사사봉행겸임(寺社奉行兼帶) 多田監物, 구미가시라(與頭) 三浦內藏允, 어인판역(御印判役) 小野六郎右衛門, 오메쓰케(大目付) 樋口惣左衛門가 식대(式臺)까지 맞이하러 나왔다는 기사이다.²⁸⁾ 이어서 이정암 동행자, 역관 동행자가 각각 10명

27) 宗家文庫調査委員會, 『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 嚴原町教育委員會, 1978, 279쪽. 2012년 발간된 『對馬宗家文庫史料冊子目録』第一卷(長崎県教育委員會) 224쪽에도 가칭으로서 표제를 「譯官迎送裁判每日記」로 표시한다.

28) ⑦ 「和中麻上下着 佐治奎左衛門. 右者以耐庵江時分之御使者被仰付相務, 尤前日申渡置.
對羽織袴着 組之者式人. 右者以耐庵御出之時附番申付也.

씩, 또 식대(武臺) 좌우, 하마소(下馬所)²⁹⁾에서 문위행을 환영하는 각각 4명, 하여소(下輿所)³⁰⁾에서 역관에게 양산을 퍼주는 사람 2명,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경호하는 사람 다수의 복장과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⑥이 유일하게 기록한 객관을 찾아온 시간을 알리는 사신에 관한 기사는 뒤쪽에 간단히 기록되어 있을 뿐, ‘與頭는 번의 무사들을 통솔하여 병정(兵政) 사찰 신사를 관리 지도하는 부서이다’³¹⁾ 라고 하는 것처럼, 組頭(與頭) 多田監物は 사사봉행(寺社奉行)도 겸임하여, ⑦의 기록이 역관보다도 이정암 관련을 주로하며 경호에 관한 기록이 상세한 것을 보면, 이를 작성한 부서는 역관 구미가 시라(組頭)이며 작성책임자는 監物 이외에는 없다. 게다가 문위행 전반에 상세한 기록을 남긴 ④의 아래 기사가 ⑦의 작성책임자 판명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茶禮二付, 所々辻堅, 大手御番所, 中之御門下, 唐門下假番所, 飾武器, 番人之員數, 張幕屏風並御玄關前塀重門脇警固, 所々附番等之儀ハ委細組頭方記錄ニ書載有之ニ付相除, 尤下目付より勤來り之場所ハ大目付方記錄ニ委く候故, 除之.

즉, 다래 때에 객관에서 종가저택 사이 길가 곳곳에서 경비를 선 인원수, 막이나 병풍, 현관 앞 경호에 관해서는 「組頭方記錄」에 기록이 있으니 여기서는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⑦이야 말로 여기서 말하는 「組頭方記錄」이다. ④에 따르면 9월 17일자 淺井與左衛門・大浦兵左衛門로부터 與頭衆中에 보낸 서장에 역관 도해 업무담당자에 平田直右衛門를 임명하는 기록이 있다.³²⁾ 그 후 12월 26일에 平田直右衛門를 대신하여 多田監物が

“以酌庵巳ノ上刻, 御出ニ付寺社奉行兼帶多田監物, 與頭三浦內藏允, 御印判役小野六郎右衛門, 大目付樋口惣左衛門御式臺迄出迎.”

29) 말에서 내리는 곳.

30) 가마에서 내리는 곳.

31) 宗家文庫調査委員會, 『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 嚴原町教育委員會, 1978. 285쪽. 「與頭は藩士を統轄し、兵政・社寺を司どる部局である」

32) ④ 「組頭 平田直右衛門. 大目付 樋口惣左衛門. 御勘定役 土田常右衛門. 右者今般譯官渡海二付, 御用掛被仰付候間, 諸事先格之通無滯被相心得候様ニ可被申渡候. 尤直右衛門江者於詰問相達し候. 以上. 九月十七日 淺井與左衛門・大

그 역에 임명되었다.³³⁾ 같은 날 「國元表書札方每日記」³⁴⁾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근무자는 氏江主水, 大浦兵左衛門, 淺井與左衛門, 與頭鈴木市之進, 多田監物, 三浦內藏之允, 平田所左衛門이었다. 氏江主水 등 3명은 지배역(支配役)에 해당되고 구미가시라(與頭)에는 多田監物 등 4명이 있었다. 이 4명 중 구미가시라로서 역관 관련 임무를 담당한 사람이 多田監物이다.

사료에 관한 분석은 위와 같이 정리하고, 다례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자. 보통 행사의 절차는 선례를 따르기 때문에 매번 비슷하게 진행된다. 그런 가운데에 당시의 사정을 반영한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가 있다. 아래의 경우는 역관에 의한 구상(口上) 즉 구두진술이다. ①에서 인용한다.

畢而殿樣御着座, 與左衛門進ニ寄り御口上申上候様ニと玄僉知江申達, 玄僉知三帖目迄進ニ出, 謹而口上申上ル.

朝廷被申候. 大御所樣御寶算御長久被遊御座, 公方樣江被讓御世御目出度御事奉存候. 將又御自分様ニも弥御堅固御歸州被成, 珍重奉存候. 右御祝詞以使者申候.

右相濟而御取次ニ差向ひ,

公方樣江御祝詞之儀ハ先例之通, 信使を以被申筈ニ御座候.

淺井與左衛門御取合せ仕ル.

“舊例ハ口上ニ而信使參府時節之義相伺候得共, 此度ハ修聘使被差渡候付, 口上先格ニ違.

다례 때에 예조가 보낸 서계를 번주에게 피로한 후, 일어서서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은 번주를 향하여 두 역관이 예를 올린다. 그리고 번주는 자리에 앉는다. 淺井與左衛門로부터 구두진술(口上)을 하도록 안내를 받은 현태의 은 ‘조정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구 관백의 장수와 신 관백의 승습을 축하드리며, 동시에 번주 귀국을 축하한다’고 구두진술 하였다. 이때 쟁점 중 하나인 구 관백 퇴휴 축하 서계는 성사되지 않았다. 그 대신

浦兵左衛門・與頭衆中

33) ④ 「十二月廿六日 組頭 多田監物. 右者譯官渡海二付, 御用掛平田直右衛門被仰付置候處, 御役替二付, 爲代譯官御用掛被仰付候段, 於詰問與左衛門より申達。」

34) 『每日記』, 對馬歷史民俗資料館所藏, Aa-1-198.

역관이 구두로 축사를 올리는 것으로 다마번은 타협하였다. 이 역관의 구두진술은 에도(江戶)에도 보고되었다. ③ 「江戶御國往復書狀左記」, 4월 12일에 번청에서 에도번저에 보낸 서장 첫 항목에, ‘지난 3일 대례에서 역관이 진술한 내용을 보낼 테니 문장을 보기 좋게 해 달라(節々可相繕候)’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에도번저의 대답으로서 본문 상란에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⁵⁾ 문위행이 구두로 전한 조정의 축사를 에도번저에서 수정한 것이다. 그런데, 서장 말미에 첨부되었을 구두진술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 ③에서 ‘문장을 보기 좋게 해 달라’라고 한 구상서가 ①에 기록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다. 만약 일치한다면, 다례 때 번주를 향하여 올린 조선 조정으로부터의 구두진술에는 통신사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이 중요하다. 역관이 구두로 전한 ‘신 관백에 대한 축사는 통신사를 파견하여 전하겠다’라고 한 것은 번주에게 ‘조선 조정의 말씀’으로서 전한 구두진술과 달리 중계자(取次) 淺井與左衛門에게 향하여 전하였던 것이다. 「江戶藩邸每日記」³⁶⁾에 구 관백 퇴후를 축하하는 역관의 구상서(口上書) 기사가 나오는 것은 5월 3일이다. 에도번저 가로(家老) 平田將監가 통신사를 위한 자금지급증서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하여 酒井雅樂頭를 찾아갔을 때, 구상서를 누구에게 보여드리면 좋을지 御用人 大山兵太夫에게 물어보았고, ‘酒井가 부재중이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누구든 보내도록 하라’는 답을 듣는다. 다음 날 에도번저는 사신을 보내고 酒井雅樂頭에게는 사본을, 本多伯耆守에게는 상자에 담은 구상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5일에 서계로 막부로부터의 회답을 받는다. 그 회답에는 ‘구상서를 보았다’라고만 써여져있다. 막부가 수정한 것이 아니라면 구상서 표현을 수

35) ③ 「一去ル三日茶禮之日取極候處、前夜雨天ニ而致心遣候へハ當日雨晴兩使罷上、殿様御對面被成、以酌和尚ニモ御對話、萬端如先規茶禮之御規式、無滯相濟候。依之右來翰被差越候間、御連狀御判紙ニ被相繕、例之通可被差出候。尤書翰寫并和ケ共ニ差越候。就夫先達而申進候通、公義御代替之御祝儀之義ハ信使を以申上候筈ニ付、今度此方様迄茂書翰無之。玄兪知從朝廷之口上として帳末之通申上候旨、御連狀又ハ御口上書ニ成共斟酌之上、節々可被相繕候。頭書(略)譯官申上候口上之趣、帳末ニ書載被差越候趣を於爰元吟味之上少々致添削、別紙ニ認、御狀ニ相添差出候處、少し之滯も無御座御請取被成候。尚又別紙本書ニ委細令書載候。」

36) 『江戶藩邸每日記』, 대마중가문서[제 II 기-제52필], 유마니서방, 2001.

정한 것은 역시 에도번저가 틀림없다고 하겠다.³⁷⁾

그럼 어떻게 문장을 수정한 것일까. 아쉽게도 구상서 문장을 ‘보기 좋게 해 달라(節々可被相繕候)’라는 요청이 기록된 ③에는 구상서의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 ①②에서 4월 3일 다레 날의 기록과 이를 뒤인 5일에 宗對馬守 (=대마번주)로부터 막부 노중(老中) 酒井雅樂頭, 堀田相模守, 西尾隱岐守, 本多伯耆守에게 보내진 서장이라고 하여 5월 4일에 대마번의 에도번저에서 제출된 두 가지를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4월 3일의 기록은 앞에서 이용하였다. 5월 4일에 에도번저에서 제출된 구상서는 ①② 「譯官持渡り之來翰, 公義江被差上候付, 御連狀并譯使口上左記之」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래에 인용한다.

譯官口上

大御所様御寶算御長久被遊御座, 公方様江被爲讓御代目出度御事奉存候. 尤公方様江御祝詞之儀先例之通以信使被申筈御座候. 次ニ御自分様江茂弥御堅固被成御歸州, 珍重奉存候. 右御祝詞以使者申上候.

①② 4월 3일 다레 날의 기록인 구 관백 퇴휴 축하의 구두진술과 비교하면 밑줄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 다레 날의 기록에는 역관이 조선 조정을 대신하여 번주에게 전달한 진술(신구 관백의 퇴휴와 승습 및 번주의 귀국 축하)과 역관이 개인적으로 증계자(取次)에게 전달한 진술(통신사 파견)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런데 위 기록은, 두 가지를 합하였고, ‘신 관백에 대한 축사는 선례대로 통신사를 파견하여 전하겠다’라는 말이 역관이 증계자(取次)에게 할만 것인데도 마치 조정에서 전한 식의 발언이 되어 있는 것이다. 조선통신사는 어디까지나 조선의 요청으로 파견되는 사절이라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그러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 역관이 증계자에게 한 통

37) 『江戸藩邸毎日記』, 대마중가문서[제Ⅱ기-제52일], 유마니서방, 2001. 「御狀令披見候大御所様御隱居御祝儀, 從朝鮮國以譯官申上候付而口上之趣別紙書載被越之到來, 則及上聞候. 且其方歸國ニ付而從禮曹參議之書翰被差越候到來候. 紙面之趣各一覽之事候. 恐惶謹言.

五月五日 本多伯耆守
宗對馬守様」

신사 발언을 번주에게 조정이 전한 식으로 모양새를 꾸민 것이다. 이 구두 진술에 관한 기록은 조선 사료 『通信使膽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IV. 中宴席

4월 12일에 만송원연석(萬松院宴席)을 마치고 22일에는 중연석(中宴席)이 있었다. 만송원연석에서는 통신사와 관련한 절차가 없어서 ①②에 상세한 기록이 없다. 중연석에서 노(能) 공연이 있었다. 그리고 중연석은 통신사 내 빙 시기에 관한 서계 전달 및 통신사 규정(通信使講定)을 공지하는 통신사 교섭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였다. 서원(書院)에 안내 받은 역관이 요(褥) 위에서 남향으로 서 있는 번주 宗義如에게 두 번 반 경례한 후, 이어서 淺井與左衛門가 ‘내년 통신사 도해시기를 서장으로 전달하오니 귀국 후에 조정에 알릴 것, 또 통신사 규정에 관해서는 봉행(奉行)이 전달한다’라는 번주의 뜻을 전달하였다. 이 날 역관에 전달된 서장은 모두 세 통이다. 먼저 ‘대마도태수(對馬州太守)’ 이름으로 작성된 ‘도주 날인 있는 서장(御朱印之御書付)’이다.

來戊辰年信使來聘并參府時節之儀，先達而修聘使差渡申達置候。此度者時節之儀，從東武堅被仰出置候間，海陸之道程相考，三使正月中旬上船被仰出付，四五月之交出府有之候樣ニ歸國之刻無間違朝廷方江能々可有申達候。以上。

四月日 對馬州太守 御朱印

서장에는 ‘에도 도착 시기는 막부가 엄명(嚴命)한 것으로 내년 4월 5월로 하며, 따라서 일정을 고려하면 1월 중순에는 부산에서 승선하라는 명이 조선조정에서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역관으로부터 한문으로 된 서장이 제출되었다. 일문도 함께 ①②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한문만을 인용한다.

覺

一三使臣差除似當在於今年四月之內，則治行諸節勤費一年，然後自京可以離發，勢不及於明年春三朔前下釜山，而四五月間，方可辭朝下釜山耳。

丁卯四月日 問慰官 玄僉知 洪僉正
 裁判尊公

위는, ‘통신사 정사, 부사, 종사관 차출이 4월에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준비에 1년이 걸리며, 한양 출발은 내년 4~5월이 되니, 내년 3월 전에 부산에 도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이며, 이것이 세통 중의 첫 번째 서장에 기재된 기록이다.

두 번째 서장은 이른바 ‘통신사강정절목(通信使講定節目)’이며 총 12항목이다. 증연석에서는 일문으로 된 서장이 전달되었고, ①②에는 年壽로부터 재판 鈴木市之進에게, 귀국할 때 답변을 보고하라는 지시가 본문 뒤에 기재되어 있으며, 서두에는 이 서장은 鈴木市之進가 문위행을 부산까지 보내기 위해 대마도를 출발할 때 전달한다는 기재도 있다.

세 번째 서장은 ‘두 역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兩使江御內々)’하는 것으로, 무명 7속과 5속이 각각에게 하사되었다는 기록이다. 기록에는 ‘증연석에서 임무를 맡게 한 후에 당상 당하의 신분에 따라서,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은(銀) 50~100장을 목록으로 전달하였다. 하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1734년에는 문위행이 宗義如 번주직 습봉과 宗方灑 퇴휴를 축하하는 서계를 예단과 함께 가지고 왔으므로, 비공식 하사는 중지되고 있었으나 그 규칙을 뒤집어서 김첨지에게 은 50장, 박정에게 30장을 하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738년에는 박첨지와 김첨지에게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에 대하여 무명 5속과 3속을 하사하였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역관이란 대마번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는 것이 없으면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입장이다. 그런데 요즘은 상거래가 쇠퇴하여 역관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 모두 대마번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보는 일이 없어졌다. 또한 대마번을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 때로는 보상을 주지 않으면 임무를 열심히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역관들이 곤궁하고 있어 문위행으로 도해하는 준비도 쉬운 일이 아니어서 중요한 임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통신사 강정 임무를 명받은 만큼, 이에 각별한 배려로 하사한다’라고 밝히고 있다.³⁸⁾ 그런데 조선

38) ①② 「右渡海譯之儀, 以前小中宴席之節御用之儀被仰合候跡ニ而堂上堂下之分ニ應シ,

사료에 비공식적 보상에 관한 기록은 없다. 대마번과 역관 사이에는 크고 작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존재한 것이다.

식사가 끝나고 두 역관은 기린노마(麒麟の間)로 자리를 옮겨서 年寄들과 대좌하고, 재판 鈴木市之進, 어인판역(御印判役) 小野六郎右衛門, 조선방 가시라야쿠(頭役) 松浦贊治, 岩崎喜左衛門가 자리를 함께 한 자리에서 통사 阿比留俊三郎로부터 통신사 강정에 관한 전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두 역관은 문의할 것이 있다고 하였고, 조선방 가시라야쿠(頭役) 두 명이 객관을 찾아가서 역관에게 과거의 기록을 전달하였다. 기록은 총 세 통이었다. 그것은 통신사가 과거에 신구 관백을 두 차례(1607, 1624년) 배알한 기록이었다. 그 내용은 도해 시기와 삼사(三使)의 직위와 성명, 그리고 신구 관백 등을 배알한 시기와 장소에 관한 것이다.³⁹⁾ 이를 근거로 구 관백 배알과 그에 따른 예단 마련이 문제가 되었음이 추측된다. 지난 해, 관백퇴휴고지차와 접대는 선례가 없는 일이라며 접대 실시 여부와 관련해 야기된 것은 졸론⁴⁰⁾에

或ハ銀百枚或ハ五貫目七拾枚五拾枚程御内々ニ而御目錄被成下候例有之候得共、近年御時勢違候譯を以、去甲寅年譯官渡海之節より御内々被成下物被相止候与之儀ニ而定式外ニ被成下物無之候得共、其節ハ御隱居様江之御書翰持來候付、從御隱居様金僉知江銀五拾枚、朴正江同參拾枚被成下候。其後戊午年、朴僉知金僉正罷越候節兼而御用向精ニ入相勤候譯を以朴僉知江公木五束金僉正江同三束被成下候。忽而譯官之儀御國之御蔭ニ而無之候而ハ難相立候處、近年御商賣相哀譯官中勝手ニ相成候義無之候得者、一統御恩慮を蒙候儀不罷成候。夫とも其内御用を相勤候者ニハ不時之御賞賜不被成下候而ハ譯官中相勤ニ御用出精可仕様無御座候。殊譯使ニ罷越候義、近年譯官中之困窮ニ而ハ仕出容易ニ相成候事ニ而無之候得者、似合重キ御用向無之候而も以前之通、御内々より之被成下物有之度義ニ奉存候。増而此度者節目講定之御用をも被仰付義ニ御座候得者、格別ニ被思召上候而、右之通被成下度奉存候。此段奉伺候。

- 39) ①② 「丁未慶長十二年春、朝鮮遣通政大夫呂祐吉、通訓大夫慶暹、通訓大夫丁好寬來聘 閏四月通信使拜謁。 神君殿下於駿府／台德殿於武城
甲子寬永元年秋、朝鮮遣通政大夫鄭陞、通訓大夫姜弘重、通訓大夫辛啓榮來聘 十二月通信使拜謁。 大猷殿下於正殿／台德殿下於西殿
壬戌天和二年六月、朝鮮遣通政大夫尹趾完、通訓大夫李彦綱、通訓大夫朴慶後來聘
八月廿七日通信使拜謁。 常憲殿下於正殿／儲君殿下於西宮」

40) 田阪正則, 「關白退休告知差倭(1746년)를 둘러싼 朝日問交渉」, 『韓日關係史研究』 56, 2017, 221~248쪽.

서도 언급하였지만, 통신사가 구 관백을 배알하고 예단을 보내는 것으로 인한 문제⁴¹⁾는 대마번에게 있어서 중대한 교섭 과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통신사내빙 교섭은 문위행을 대마도에 초청함과 동시에 통신사청래차왜도 파견하여 왜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通信使膽錄』에도 문위행보다 청래차왜와의 협상 기록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문위행은 이후 5월 9일 이정암 연석, 5월 16일 별연석(別宴席), 6월 9일 출연석(出宴席), 그리고 6월 11일에 ‘회답 서계 전달(御返翰御渡)’이라는 일련의 행사를 거듭하면서 6월 16일에 승선하여 17일에 부중(府中)을 출발(出帆)하고, 18일에 사스나(佐須奈) 도착, 7월 4일에 출발, 5일에 기장(機張)까지 항로를 이탈하다가 7일에 부산에 무사히 도착한다. 재판 鈴木市之進가 탄 배는 울산 염포에 도착한 후, 9일에 왜관에 도착한다.

V. 맺음말

1747년 문위행을 대마도에서 맞이하는 데에 있어서 논의된 교섭 항목은, 첫째, 연내 혹은 새해 1월초에 문위행 도해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둘째, 다례 때 조선 조정의 명으로 역관이 번주에게 통신사 도해 시기를 구두로 문의하게 할 것, 셋째, 역관이 통신사 도해 시기를 문의한 즉시 통신사청래차왜를 파견한다는 것을 전달할 것, 넷째, 문위행 인원수는 65명으로 제한한다는 것, 다섯째, 역관은 구 관백 퇴후 축사와 번주 귀환 축사 서계 두 통을 지참하게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계의 사본을 미리 대마번에 보내고 내용을 검토한 후 파견하도록 할 것이었다.

41) 『備邊司膽錄』1747년 4월26일 「今四月二十五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右議政閱所啓, 此乃東萊府使與接慰官連名狀啓也, 今此信使之行, 專爲新關伯承襲致慶, 則舊關伯前禮物拜見等節, 既無可據前例, 所當據理防塞, 邊臣之稟請, 已極不當, 而禮曹稱以事面稍重, 請令廟堂稟處, 亦涉不當, 此則事當嚴飭防塞矣, 上曰, 此無前例, 則萊伯與接慰官, 可以禮爭之, 不可稟報於朝也, 閱曰, 臣欲請推, 而未果矣, 約條外有請, 則不爲據例爭執, 稟請於朝, 極爲非矣, 上曰, 紋緞旣禁, 而彼倭, 則以有約條之故, 不得已送之, 以此例外稟請, 則不可推考而止, 萊伯及接慰官, 一竝拿處, 任譯亦拿處可也」

문위행이 대마부중에 도착한 것은 3월 26일이었으니, 첫 번째 임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 항목은 실제로는 의문이 드나 형식적으로는 성사된 것처럼 꾸미었다. ①② 4월 3일자 기록에는, 역관이 직접 ‘통신사 에도 도착 시기(信使參府時節之儀)’에 관해서 언급한 상대는 번주가 아니라 중계역을 맡은 淺井與左衛門였다. 그리고 이 구두진술 내용도 어디까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다. 조선 사료에는 이때의 역관의 발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마번이 에도번저에서 역관의 구술 표현을 수정하였다는 기록도 있었다. 셋째 항목은 통신사청래차왜는 실은 문위행이 아직 부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대마번에서 파견된 상태였다. 왜관 도착일은 2월 16일이다.⁴²⁾ 이에 관해서는 후일 통신사청래차왜 고찰에서 논할 것이다. 넷째 항목은 인원수를 초과한 22명에 대해서는 번이 접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목적은 달성하였다. 다섯째 요구는 거절당한 셈이 되었다.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조선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고 대마번도 이를 용인하였다. 대마번은 문위행을 통해서 ‘구 관백 앞으로 보낼 서계 및 예단’을 바치게 할 수 없었고, 이는 통신사를 통해서 필히 성사시켜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마지막 항목은 문위행이 부산을 출발하기 전에 훈도와 별차를 설득한 끝에 성사할 수 있었다.

어쨌든 1748년 4~5월에 통신사가 에도에 도착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 교섭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대마번의 입장에서는 그 외의 항목을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조선과 막부 양쪽에 대하여 체면과 형식을 갖추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1747년 문위행에 관련된 대마도종가문서 중 언급한 것은 모두 7종이다. 이 외에도 1747년 문위행을 기록한 문서는 존재한다.⁴³⁾ 사료가 많아, 이번에는 사료 자체에 관한 언급이 많았다. 통신사내빙 교섭은 왜관에서도 동시 진행 중이고, 증연석 이후에 관한 내용은 통신사청래차왜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기에 후일을 기약하기로 한다.

42) 『延享信使記錄』 三, 대마종가문서[제 I 가-제 30릴], 유마니서방, 1998.

43) 대마역사민속자료관 소장 「與頭役每日記」를 못 보고 있다. 현재 자료관이 2년 휴관하고 있음.

■ 참고문헌

<사료>

- 『每日記』, 대마역사민속자료관, 분류기호 Aa-1, 번호 198.
『信使譯官度數記』, 국사편찬위원회, 등록번호 6501.
『譯官ニ付諸御用向控末<共ニ三冊之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5330.
『譯官記錄始<共ニ三冊之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535.
『譯官記錄』,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211.
『譯官迎送裁判每日記』, 대마역사민속자료관, 분류기호 Dz-6, 번호 1.
『延享信使記錄二』,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520.
『往復書狀全<共ニ三冊之内>』,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1534.
『正徳信使記錄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문서번호 218.
『通信使謄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청구기호 규 12870의 1.
『延享信使記錄』, 대마중가문서[제 I 기-제30일], 유마니서방(書房).
『江戸藩邸每日記』, 대마중가문서[제 II 기-제52일], 유마니서방.

<논문·목록>

- 김경미, 「17~18세기 對日 외교·교역과 매[鷹]」, 『역사와 세계』 34, 2008.
유채연, “조선후기 ‘問慰行’ 명칭과 성립과정에 대한 재고”, 『한일관계사연구』 52, 2015.
윤유숙, 「조선후기 문위행(問慰行)에 관한 재고(再考)」, 『한일관계사연구』 50, 2015.
이상규, 「仁祖代 전반 問慰行연구」, 『한일관계사연구』 35, 2010.
_____, 「17세기 중반 問慰行을 통해 본 대일외교의 내용과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75, 2015.
정우봉, 「1734년 문위사행록(問慰使行錄) 『해행기(海行記)』 연구」, 『대동문화연구』 94, 2016.
홍성덕, 「朝鮮後期 「問慰行」에 대하여」, 『한국학보』 16(2), 1990.
_____, 「조선후기 對日외교사절 問慰行의 渡航人員 분석」, 『한일관계사연구』

구』 11, 1999.

箕輪吉次, 「延宝九(1681)年正月譯官使」, 『일본학논집』 20, 2005.

箕輪吉次, 「天和元年(1681)講定譯官使」, 『비교문화연구』 11-2, 2007.

箕輪吉次, 「天和元年講定譯官使派遣まで」, 『일본학논집』 21, 2007.

長崎県教育委員會, 『對馬宗家文庫史料冊子物目錄』第一卷, 長崎県立對馬歴史民俗資料館, 2012.

田代和生, 「國立國會圖書館所藏「宗家文書」目錄」, 『참고서지연구』 76, 2015.

田阪正則, 「關白退休告知差倭(1746년)을 둘러싼 朝日間交渉」, 『한일관계사연구』 56, 2017.

宗家文庫調査委員會, 『宗家文庫史料目錄(日記類)』, 嚴原町教育委員會, 1978.

池內敏, 「譯官使考」,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史學62, 2016.

❖ ABSTRACT

A Study on the Tsushima Clan Who Invited the Envoy Munwihaeng in 1747

Tasaka, Masanori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tasks to be carried out by Tsushima clan who invited the envoy -the 38th Munwihaeng- from Korea in 1747, and the process and results. This envoy sent out for the purpose of congratulating Tokugawa, Yoshimune's retirement and Tsushima lord's return home, and also negotiate about Korean Diplomatic Envoys to Japan coming in the future.

In late 1745, Yoshimune retired, and Ieshige inherited the position of Shogun. Then in 1746 the Edo Shogunate ordered the Tsushima clan to invite the Korean Diplomatic Envoy to Edo between April and May two years after. To the Korean Diplomatic Envoy's invitation, many stages were necessary. In addition, Korea insisted on following the precedent in exchange with Japan. This time, throne of this new Shogun occurred due to retirement of the former Shogun. In the last 100 years, the history that the former Shogun died and the new Shogun reigned continued. For that reason, Korea had no record of sending letters and gifts to the old Shogun who retired. Because there was no precedent, Korea was unable to smoothly respond to Japan's request. This paper considers the negotiation process with Korea and the Tsushima clan, makes a prestige of the shogunate, in order to be recognized from the shogunate.

Key Words : 1747, Munwihaeng, Tsushima clan, old documents of the Tsushima Sos, Korean Diplomatic Envoy to Japan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